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(제정) 2019. 8. 8.

(개정) 2024. 3. 2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 (구성)

-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 중 이사로써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의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8 조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 3 조 제 3 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위원회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 대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사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 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의결 사항)

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 및 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하며,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준법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의사록과 회의에 부의한 원안은 간사가 보관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